

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-99 호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취소 처분 전 청문실시 사전통지 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12일

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



1. 공고내용 :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
2. 공고기간 : 2026. 6. 12. ~ 2026. 6. 26. (14일간)
3. 처분대상자 : 엘에스쉽핑(주) 대표 김○현
 - 가. 허가취소 장소 :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106-36번지선 전면 공유수면
 - 나. 허가취소 면적 : 305㎡
 - 다. 점·사용의 기간 : 2024. 12. 25. ~ 2029. 12. 24. (5년)
 - 라. 점·사용의 유형 :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설치

- 붙임 1.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서) 1부.
2. 의견제출서(양식) 1부. 끝.

여수지방해양수산청

수신자 엘에스윙핑(주) 대표
(경유)

제 목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정된 처분의 제목	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취소				
당사자	성명(명칭)	엘에스윙핑(주) 대표 김○현			
	주 소	전남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, 203호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와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 폐지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취소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제7호				
청문실시	기관명	여수지방해양수산청	부서명	해양수산환경과	담당자 안○열
	주 소	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		전화번호	061-650-6084
청문실시	일시	2026년 7월 8일 14시부터 15시까지(1시간)		장소	여수지방해양수산청 2층 소회의실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주무관		
		성명	이○래		

<청문시 유의사항>

-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-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여 수 지 방 해 양 수 산 청

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 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 팩스번호() 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

의견제출 내용	당사자	성명(명칭) 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	기타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